

대신대학교 외부 인사에 대한 여비 지급 세칙

제정 2020. 08. 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국내 여비 규정에 따른 외부인사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인사에 한한다.

1. 본교를 위하여 본교가 소집한 회의 등에 참석한 자
2. 본교를 방문한 퇴직자 및 본교 발전에 기여한 자
3. 본교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한 자
4. 본교 입시 관련 학생유치 기여자(목사, 장로, 전도사, 선교사 등)
5. 본교에 도서기증, 장학금 전달, 홍보 취재차 방문 외부 인사 등
6. 기타 학교발전을 위해 총장이 초청한 외부 인사

제3조(재원) 외부 인사에 대한 여비의 재원은 본교 교비회계 중 특별회계(10만기도후원)에서 우선 지출 한다.

제4조(여비의 지급 구분) 외부 인사에 대한 여비는 별표1의 지급 구분에 의한다.

제5조(여비의 계산) 외부 인사에 대한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 다만, 본교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증액할 수 있다.

제6조(기타소득) 외부 인사에 대한 여비는 전액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에 따른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.

제7조(세부사항)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①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지급된 외부 인사에 대한 여비는 이 세칙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.

(별표 1) 외부 인사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

지역 구분	금액(원)	비 고
대구·경북 지역	100,000	숙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산
부산·경남, 충청남·북도 지역	150,000	
전라남·북도, 강원도, 제주도, 경기·수도권 지역	200,000	

1. 2020년 기준 기타소득 원천세 세금 공제율 8.8%(125,000원 이하는 세금공제 없음)
2. 지역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5조에 의거 본교 발전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.